

부천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09년 10월 6일

나. 회부일자 : 2009년 10월 6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55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2009. 10. 14) 상정
- 제155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2009. 10. 14) 원안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이 환 희 의원)

가. 제안이유

-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건설공사의 완벽한 시공을 통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고 건전한 공사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건설공사 현장의 부실공사의 내용을 아는 사람이 부실시공 사례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건설 시공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건설공사 관계자의 경각심을 높여 궁극적으로 부실공사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고자 하는데 있음.

나. 주요골자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과 적용범위에 대하여 정함.
(안 제2조, 제3조)
-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기한은 건설공사의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정하며, 신고자의 신분보호를 위하여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함. (안 제8조)
-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를 접수·처리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함. (안 제9조)

- 시장은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의 방지와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부천시건설공사부실시공방지위원회를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0조)
- 부실공사의 신고대상은 부천시에서 발주한 사업 중 순공사비가 1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하며, 신고는 신고자가 직접 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모사전송·우편 등으로 하되, 실명으로 하도록 함. (안 제11조)
-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부실공사로 신고된 사항 중 부실시공의 사실이 밝혀진 신고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며, 동일 사항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신고가 있을 때에는 먼저 신고한 자에게 포 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안 제12조)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 특이사항 없음.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 음

나. 반대토론

○ 없 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

○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부천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공사 시행의 적정을 기하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부실시공”이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제5호가목의 부실별점측정기준에서 정하는 주요부실내용으로서 별표의 1등급부터 4등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주요 구조부”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천시(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부천시가 설립한 공기업(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제4조(건설공사의 부실방지사책)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의 부실측정에 관한 사항

2.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
3.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건설공사의 부실추정)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부실시공의 신고를 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4에 따른 부실추정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부실추정을 위하여 현장보존이 필요하다면 부실시공의 내용이 가려질 때까지 그 건설공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건설공사에 지장이 있거나 건설공사의 품질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부실시공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공사의 진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 시장은 법 제21조의5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행정안전부행정감사규칙」 제7조에 따른 일상감사를 통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효율적인 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 외에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점검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등) ① 시장은 법 제24조 및 제26조의2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을 두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8조에 따라 부실시공의 신고를 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을 통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건설공사 부실시공의 신고 등) ①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실시공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자는 시장에게 그 사항을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9조에 따른 부천시건설공사부실시공방지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직접 방문하거나 모사전송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는 신고를 하는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의 실명으로 하여야 하며, 실명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일부터 1년이 지난 건설공사에 대한 신고는 그 사항을 접수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에는 건설공사의 명칭과 부실시공의 시기·위치·내용 등 부실측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시장은 신고자의 보호를 위하여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9조(건설공사부실시공방지신고센터) ① 시장은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에 대한 신고를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부천시건설공사부실시공방지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센터의 장은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건설공사부실시공방지위원회) ① 시장은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의 방지와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천시 건설공사부실시공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건설공사 부실시공의 신고 포상금)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신고한 건설공사가 발주청이 발주하는 공사비(사업비 중 용지비와 보상비를 제외한다) 1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고한 사항이 부실시공으로 밝혀지면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포상금의 지급)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려면 부실시공의 규모와 정도 및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의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2명 이상의 신고자가 있으면 먼저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고,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하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도록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이 결정되면 시장은 그 결정사실을 7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알려주고, 포상금을 신고자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13조(포상금 지급의 제한) 시장은 제1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고자가 익명이나 가명을 사용하여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공무원, 감리원, 시공자, 시공과 관련한 감독의 직에 있는 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부실시공을 신고하는 경우
3. 제2호에 해당하는 공사관계자의 직에 있었던 자가 재직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실시공을 신고하는 경우
4. 신고가 접수되기 이전 감독공무원이나 감리원의 점검을 받아 조치중이거나 이미 그 사실이 공개되어 조사 또는 수사 중에 있는 경우
5.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제2호에 해당하는 공사관계자와 미리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천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500호
의결 년월일	2009. 11. 23. (제157회)

발의년월일 : 2009. 10. 6.

발 의 자 : 이환희의원등9인

1. 제안이유

가.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건설공사의 완벽한 시공을 통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고 건전한 공사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건설공사 현장의 부실공사의 내용을 아는 사람이 부실시공 사례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건설시공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건설공사 관계자의 경각심을 높여 궁극적으로 부실공사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고자 하는데 있음.

2. 주요내용

-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과 적용범위에 대하여 정함. (안 제2조, 제3조)
- 나.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기한은 건설공사의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정하며, 신고자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함. (안 제8조)
- 다.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를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시에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함. (안 제9조)

라. 시장은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의 방지와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천시건설공사부실시공방지위원회를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0조)

마. 부실공사의 신고대상은 부천시에서 발주한 사업 중 순공사비가 1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하며, 신고는 신고자가 직접 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모사전송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하되, 실명으로 하도록 함. (안 제11조)

바.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부실공사로 신고된 사항 중 부실시공의 사실이 밝혀진 신고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며, 동일 사항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신고가 있을 때에는 먼저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안 제12조)

□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발취 사항 1부.

부천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공사 시행의 적정을 기하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부실시공”이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제5호가목의 부실벌점측정기준에서 정하는 주요부실내용으로서 별표의 1등급부터 4등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주요 구조부”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천시(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부천시가 설립한 공기업(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제4조(건설공사의 부실방지시책)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의 부실측정에 관한 사항
2.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
3.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건설공사의 부실측정)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부실시공의 신고를 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4에 따른 부실측정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부실측정을 위하여 현장보존이 필요하다면 부실시공의 내용이 가려질 때까지 그 건설공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건설공사에 지장이 있거나 건설공사의 품질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부실시공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공사의 진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 시장은 법 제21조의5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행정안전부행정감사규칙」 제7조에 따른 일상감사를 통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효율적인 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 외에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점검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등) ① 시장은 법 제24조 및 제26조의 2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을 두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8조에 따라 부실시공의 신고를 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을 통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건설공사 부실시공의 신고 등) ①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실시공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자는 시장에게 그 사항을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9조에 따른 부천시건설공사부실시공방지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직접 방문하거나 모사전송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는 신고를 하는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의 실명으로 하여야 하며, 실명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일부터 1년이 지난 건설공사에 대한 신고는 그 사항을 접수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에는 건설공사의 명칭과 부실시공의 시기·위치·내용 등 부실측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시장은 신고자의 보호를 위하여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9조(건설공사부실시공방지신고센터) ① 시장은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에 대한 신고를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부천시건설공사부실

시공방지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센터의 장은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건설공사부설시공방지위원회) ① 시장은 건설공사의 부설시공의 방지와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천시 건설공사부설시공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건설공사 부설시공의 신고 포상금)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신고한 건설공사가 발주청이 발주하는 공사비(사업비 중 용지비와 보상비를 제외한다) 1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고한 사항이 부설시공으로 밝혀지면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포상금의 지급)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려면 부설시공의 규모와 정도 및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의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2명 이상의 신고자가 있으면 먼저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고,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하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도록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이 결정되면 시장은 그 결정사실을 7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알려주고, 포상금을 신고자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13조(포상금 지급의 제한) 시장은 제1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고자가 익명이나 가명을 사용하여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공무원, 감리원, 시공자, 시공과 관련한 감독의 직에 있는 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부실시공을 신고하는 경우
3. 제2호에 해당하는 공사관계자의 직에 있었던 자가 재직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실시공을 신고하는 경우
4. 신고가 접수되기 이전 감독공무원이나 감리원의 점검을 받아 조치 중이거나 이미 그 사실이 공개되어 조사 또는 수사 중에 있는 경우
5.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제2호에 해당하는 공사관계자와 미리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포상금의 지급기준 (제12조제2항 관련)

구 분	부실시공의 등급 정도	포상금 지급 한도액
1 등급	주요구조부의 부실로 인하여 붕괴 위험이 있어 시급히 철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하는 경우	1,000만원 이내
2 등급	주요 구조부의 부실로 보강이 필요한 경우	700만원 이내
3 등급	주요 구조부외 부실로 보수가 필요하거나 주요 구조보가 아닌 사항으로 철거 재시공하여야 하는 경우	500만원 이내
4 등급	주요 구조부가 아닌 곳의 부실로 인하여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200만원 이내
그 밖의 등급	신고내용이 1등급부터 4등급까지는 속하지 아니하지만 사업자의 안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되는 경우	감사장

□ 관계 법령 발췌서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7.8.28, 1999.4.15, 2003.5.29, 2007.5.17>

1. "건설산업"이라 함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건설업"이라 함은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3. "건설용역업"이라 함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설계·감리·사업관리·유지관리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이하 "건설용역"이라 한다)을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4. "건설공사"라 함은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 가.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 라.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
- 4의2. "종합공사"라 함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 하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 4의3. "전문공사"라 함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5. "건설업자"라 함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등록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6. "건설사업관리"라 함은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타당성조사·분석·설계·조달·계약·시공관리·감리·평가·사후관리등에 관한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7. "발주자"라 함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를 제외한다.
8. "도급"이라 함은 원도급·하도급·위탁 기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9. "하도급"이라 함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0. "수급인"이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11. "하수급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12. "건설기술자"라 함은 건설공사에 관한 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자로서 관계법령에서 그 기술이나 기능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말한다.
13. 삭제 <2007.5.17>

○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 (건설공사등의 부실측정) ①국토해양부장관, 발주청(「[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동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무관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계등 용역,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건설공사의 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타당성 조사시 수요예측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부실벌점을 주어야 한다. <개정 1997.1.13, 2001.1.16, 2004.12.31, 2007.5.17, 2008.2.29>

1. 건설업자
2. 주택건설등록업자
3. 설계등 용역업자(「[건축사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
4. 감리전문회사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고용된 건설기술자·감리원 또는 건축사
 - ②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벌점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부실벌점에 따라 입찰시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개정 2001.1.16>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청과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부실벌점을 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그 부실벌점을 종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2008.2.29>
 -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실정도의 측정기준·불이익 내용 및 부실벌점의 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13, 2008.2.29>

제21조의5 (건설공사현장등의 점검) ①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현장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의4제1항](#) 각호의 자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법률에 의한 영업정지등의 요청을 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1999.4.15, 2008.2.29>

②건설공사의 현장을 점검하는 자는 점검의 중복 등으로 인하여 당해 건설공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1.1.1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점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13, 2008.2.29>

[본조신설 1995.1.5]

제24조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①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 및 공정관리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이하 "품질관리계획"이라 한다) 또는 시험시설 및 인력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이하 "품질시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에 고용되어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6, 2004.12.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등을 하였거나 발주를 한 행정기관의 장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은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품질관리를 적정하게 실시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01.1.16, 2004.12.31>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범위,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기준 및 수립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16, 2004.12.31>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의 확인방법·절차 기타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1.1.16>

⑥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비가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규모 및 종류에 따라 품질관리비의 사용방법등에 관한 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16, 2008.2.29>

[전문개정 1997.1.13]

제26조의2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

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에 고용되어 안전점검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6>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건설공사의 범위,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및 절차, 안전점검의 실시시기·방법 및 대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16>

④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한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이하 "종합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5.17>

⑤제4항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제출받은 발주자 중 발주청이 아닌 자는 종합보고서를 그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5.17>

⑥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해당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5.17, 2008.2.29>

⑦국토해양부장관, 발주청 및 해당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제출받은 종합보고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5.17, 2008.2.29>

⑧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2008.2.29>

⑨제8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비가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규모 및 종류에 따라 안전관리비의 사용방법등에 관한 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5.17, 2008.2.29>

[본조신설 1997.1.13]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에 고용되어 안전점검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6>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건설공사의 범위,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및 절차, 안전점검의 실시시기·방법 및 대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16>

④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한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이하 "종합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5.17>

⑤제4항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제출받은 발주자 중 발주청이 아닌 자는 종합보고서를 그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5.17>

⑥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해당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5.17, 2008.2.29>

⑦국토해양부장관, 발주청 및 해당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제출받은 종합보고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5.17, 2008.2.29>

⑧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2008.2.29>

⑨제8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비가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규모 및 종류에 따라 안전관리비의 사용방법등에 관한 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5.17, 2008.2.29>

[본조신설 1997.1.13]

